

[별표 1]

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

분류	번호	서 류 명	비고	
가. 신청인	1	○ 중소기업 (공공기관 입찰 확인용)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○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- 「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- 「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※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	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	
		2	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	필수 제출 (시스템 확인)
	3	신용평가등급확인서	필수 제출 (시스템 확인)	
나. 신청품	4	○ 기술소명자료	필수제출	
		특허 및 실용등록신안		권리증서(등록증), 등록원부(등본) 및 등록공보 사본
		NEP, NET		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※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(의견서) 제출 생략
		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		GS인증서, 시험결과서, 저작권 등록증(구 프로그램등록증) 및 프로그램 등록부(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)
		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		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
	혁신제품	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, 혁신제품 규격서		
	5	○ 품질소명자료	필수제출	
		인정자료		성능인증(EPC), 우수재활용인증(GR), 환경표지(환경마크), K마크, 우수품질 소프트웨어(GS),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,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, 신뢰성 인증,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
		- 품질 인증서 사본,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, 공인시험기관(국가, 지자체)의 시험성적서, 규격서(성능인증 및 K마크인 경우) 등 ※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,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		
	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 인정 -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(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) 또는 그 밖에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- 다만,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 -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업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인증자료			
6	○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, 안전 인증,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, 법적 의무 인증/지침 자가확인서	해당 시 반드시 제출		
7	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약약서(별지 제1호의 14서식)	필수제출		
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(별지 제1호의 15서식)		해당 시 제출		
다. 신청	8	신청모델(규격)내역(별지 제1호의 12서식)	필수제출	
	9	제품설명서(별지 제1호의 4서식)	필수제출	
	10	구성대비표(별지 제1호의 5서식)	필수제출	
	11	제품규격서(별지 제1호의 7서식)	필수제출	
	12	기술·성능 비교표 (별지 제1호의 9서식)	필수제출	
	13	약정서, 기술적용확인표 (별지 제1호의 10서식, 별지 제1호의 8서식)	해당 시 제출	

14	해외 진출실적(별지 제1호의 11서식)에 대한 증빙서류	해당 시 제출
15	신인도심사서(별지 제2호의 5서식)에 대한 증빙서류	필수제출
16	<삭제>	<삭제>
17	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(별지 제1호의 3서식)	필수제출
18	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(별지 제1호의 13서식)	필수제출
19	기술이력서	필수제출
20	특허평가보고서	해당 시 제출

※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-조달업무-우수제품-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,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(단,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)

<주>

-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(발급)받은 건에 한하며,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.(단,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가능)
 - 가의 2호, 3호의 서류는 조달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함
 - 나의 4호 서류는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유효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나의 5호 서류는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특허,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며, 특허·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.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'대한민국', 실시내용은 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
- 기술·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,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, 안전인증, 전자과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- 제출서류의 보완·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,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
- 1차 심사 이후 제출하는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발급받은 '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'를 의미 단,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경우 혁신제품과 동일특허가 적용된 동일 제품인 경우 혁신제품용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음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(생년월일, 성별)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
-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게 부여
- 위에 명시된 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물품임에도 하드웨어에 대한 품질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반려
- 기술이력서는 '25년 <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고>에 반영된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
- 지정신청 제품이 「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(조달청 공고)」에 해당할 경우 공고에서 정한 기술·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(2개 이상일 경우 핵심기술 특허 1개만 해당)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'한국발명진흥회'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'SMART 5 특허 평가보고서'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출된 특허평가보고서에 기재된 평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평가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.((단,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호(실용신안),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신청제품은 해당없음)